

영주시 농특산물 홈쇼핑 판매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

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조 제2항 및 「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3조 제1항에 따라 「영주시 농특산물 홈쇼핑 판매 지원사업」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.

2023년 1월 30일

영 주 시



1. 사업개요

- 사업명 : 영주시 농특산물 홈쇼핑 판매 지원사업
- 사업비 : 150백만원(보조 80%, 자부담 20%)
- 지원기준 : 개소당 30백만원 이내
 - ※ 신청 수에 따라 업체당 지원 한도 조정될 수 있음
- 사업기간 : 2023. 1월 ~ 12월
- 지원품목 : 영주에서 생산된 신선 농축산물 또는 가공품*
 - * 원재료 50% 이상이 영주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이어야 하며, 그 외 국내산 재료 원칙
- 사업내용 : TV홈쇼핑 방송입점비, 홈쇼핑 택배비, 판매수수료, 홍보 영상제작비, 송출료 등 지원
- 사업량 : 약 5~6개소 정도

2. 신청자격

- 영주에 사업장을 두고 영주시 농·특산물을 영주에서 생산·가공·유통하는 업체(농협,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 등)
 - * 개별농가 제외, 영주시 관외 OEM 생산 신청 불가

3. 신청서 제출 및 접수

- 신청기간 : 2023. 1. 30. ~ 2. 15. (근무시간 내, 공휴일 제외)

- 접수처 :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
- 제출방법 : 직접 방문 접수(우편 및 메일 접수 불가)
- 제출서류(붙임 서식 참조)
 - 영주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
 - 지방보조금 지원신청 사업계획서 1부
 - 단체소개서 1부
 - 기타 접수표 증빙자료 1부
- * 연매출액 증빙자료, 수상실적, 홍보실적, 상표 및 특허등록, 기술인증, 대형유통업체 출하입점 계약서 등

4.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

- 자체 선정 기준에 따라 담당부서 실무 검토 후 ‘영주시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’ 에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
- 선정기준 :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 기준표(별표 1)
 - * 단, 고득점자가 특정품목에 2개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조정하여 선발할 수 있음. 이 경우에도 최하위순위를 받은 업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
- 결과통보 : 개별 통보(심의위원회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)

5. 지방보조금 지급 및 정산

- 선정된 지방보조사업자는 실행계획서(최종 사업계획서) 및 자부담금이 입금된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이후 지방보조금 교부
-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보고 및 정산서 제출

6. 기 타

-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영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는 공개하지 않음
- 지방보조금은 반드시 별도 계정(전용통장)으로 관리·입출금하고, 결제 전용카드(체크카드 등) 사용을 원칙으로 함

- 영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제15조(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 제한)에 따라 체납자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제출해야 함
-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,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보조사업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조치
- 보조금 교부신청, 보조사업의 수행,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, 보조사업자 제재, 성과평가 등에 관한 부분은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지방재정법시행령」, 「지방보조금관리기준」, 「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,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름
-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관한 사항
 -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 -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려는 경우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해야함

7. 문의사항 : 유통지원과 김지연(☎639-3963)

(단체명)

수신자 영주시장

(경유) 유통지원과장

제 목 2023년 영주시 농특산물 홈쇼핑 판매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

2023년 영주시 농특산물 홈쇼핑 판매 지원사업을 지원받고자 다음과 같이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- 붙임 1. 사업신청서.
2. 사업계획서.
3. 단체소개서.
4. 개인정보수집동의서. 끝.

○ ○ ○ 단 체 장 (직인)

담당자

사무국장

단체장

협조자

시행

() 접수

()

우 ○○○○○ 경상북도 영주시 ○○로 ○○ (○○동) /www.

전화 054-000-0000

/전송 054-000-0000 / 0000@00000.000

/ 비공개(5)

【붙임 1】

영주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

개인 단체·법인

보조금지원 소관부서명 : 유통지원과

신청자 현황	단체명	법인(사업자)번호		
	대표자	직명 : 성명 :	직원현황	상근직원 : 사회원수 :
	연락처	홈페이지		
	소재지	※ 도로명 주소 기재		
신청사업 개요	연도	사업명	지원액	비고
	최근 3년 시보조금 지원실적	2022	(연도별 사업 총액 기재)	천원
		2021	예시 : ○○○ 사업 외 ○건	천원
		2020		천원
사업명	2023년 영주시 농특산물 홈쇼핑 판매 지원사업			
사업 (활동) 개요	. 추진기간 : . . . ~ . . 장 소 : . 대상인원 : 명(청소년 명, 일반시민 명) . 주요내용 - -			
총사업비	천원 (보조금+자부담합계)	보조금	천원(%)	
		자부담	천원(%)	
담당자 (실무자)	○ 성 명 : (직위 :) ○ 휴대전화 : ○ E-mail :			
위와 같이 영주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. 2023년 월 일 보조사업자 : 단체명 ○○○○ 대표 ○○○ 직인				
※ 첨부서류 1. 단체소개서 1부 2. 지원신청 사업계획서 1부 3. 기타 관련 증빙서류 1부				
영주시장 귀하				

【붙임 2】

단체소개서

<p>단 체 명</p>	
<p>설 립 목 적</p>	
<p>지 원 근 거 및 내 용</p>	<p>영주시 농어업·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</p>
<p>단 체 연 혁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00. 1. 10. : 000 창립 ○ '01. 1. 10. : 000 사단(재단)법인 설립 허가 ○ '02. 1. 10. : 00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
<p>인 력 현 황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 표 자 : (성명, 현직업) ※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○ 회 원 수 : 명 ※ 회원명단 제출시 개인정보 사항 유의 ○ 상근직원 : 명 (사무국장 1, 기획 1, 홍보 1, 직원1, ----)
<p>조 직 도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작성예시 ></p> <pre> graph TD A[대표자 (홍길동)] --- B[고문 (000)] A --- C[사무국장 (000)] C --- D[기획부장 (000)] C --- E[예산부장 (000)] C --- F[홍보부장 (000)] C --- G[체육부장 (000)] </pre>
<p>전 년 도 예 산 현 황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예산총액 : 천원 ※ 재원구성(100%) - 회비수입: 천원(%) - 기부금 및 모금활동: 천원(%) - 보조금: 천원(%) - 사업수익: 천원(%) - 기 타: 천원(%)
<p>단체 정관 또는 회칙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<u>법인설립허가증(사본),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(사본)을 제출하는 경우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생략 가능</u> ※ 별지작성 가능

□ 최근 2년간 주요사업 추진실적 ※ 최근2년간 단체가 수행한 주요 보조사업 추진실적 작성

사 업 명	추진실적	비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집행액 : 천원(보조금 천원, 자부담 천원) • 사업기간 : 202 ~ 202 • 사업장소 : • 참여인원 : 명 • 사업내용 :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집행액 : 천원(보조금 천원, 자부담 천원) • 사업기간 : 202 ~ 202 • 사업장소 : • 참여인원 : 명 • 사업내용 : 	

□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※ 금년도에 단체가 수행할 주요 보조사업 추진계획 작성

사 업 명	추진계획	비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요액 : 천원(보조금 천원, 자부담 천원) • 사업기간 : 202 ~ 202 • 사업장소 : • 참여인원 : 명 • 사업내용 :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요액 : 천원(보조금 천원, 자부담 천원) • 사업기간 : 202 ~ 202 • 사업장소 : • 참여인원 : 명 • 사업내용 : 	

□ 공익활동 실적 ※ 최근 공익활동 실적 및 향후 공익활동 계획 등 기재

사 업 명	추진계획	비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요액 : 천원(보조금 천원, 자부담 천원) • 사업기간 : 202 ~ 202 • 사업장소 : • 참여인원 : 명 • 사업내용 : 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요액 : 천원(보조금 천원, 자부담 천원) • 사업기간 : 202 ~ 202 • 사업장소 : • 참여인원 : 명 • 사업내용 : 	

【붙임 3】

사업계획서

보조사업명 : 2023년 영주시 농특산물 홈쇼핑 판매 지원

사업개요

- 사업목적 : 사업명에 부합하도록는 사업 특성이 나타나게 구체적으로 작성
- 추진근거 : 영주시 농어업·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
- 사업규모 : 예) ○○개보수/○○개소, 교육 연○○회 등 구체적 수치 기입
- 사업기간 : ○○○○년 ○○월 ○○일 ~ ○○월 ○○일
- 사업위치 : 사업추진 장소
- 참여인원 : 사업이나 행사일 경우 실 참여 대상 및 인원 기재
- 사업내용 : 구체적으로 작성

소요사업비

(단위 : 천원)

총사업비	%	지방보조금	%	자부담	%	비고
	100		80		20	

지방보조사업 세부 추진일정

세부사업명	세부 사업 내용	추진일정
A사업	· ·	
B사업	· ·	
	· ·	

성과목표 및 성과지표

성과목표	성과지표
* 본 보조사업을 통하여 어떠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 계량화(수치)된 목표로 제시	* 투입지표나 과정지표보다는 산출지표나 결과지표 제시

□ 예산집행계획 산출내역(예시)

(단위 : 천원)

세부 사업명	예산 항목	세부 항목	금 액	산 출 기 초	경비 사용방법
총 계			1,625천원(100%)		
지방보조금(소계)			1,300천원(80%)		
A사업 (사업수행 계획의 세부사업명과 연계)	인건비	강사료	1,000천원(61.5%)	○출연료 100,000원 × 10명 = 1,000,000원	계좌입금
		회의참석비			
		단순인건비			
	홍보비	홍보비	300천원(18.5%)	○현수막 제작 60,000원 × 5개 = 300,000원	카드사용
		인쇄비			
	사업 진행비	국내여비			
		숙박비			
		식비			
		간담회비(다과비)			
		물품구입비			
		임차비			
	활동비	기타			
		사무용품비			
자부담(소계)			325천원(20%)		
A사업 (사업수행 계획의 세부사업명과 연계)	인건비	강사료			
		회의참석비			
		단순인건비			
	홍보비	홍보비			
		인쇄비			
	사업 진행비	식비	300천원(18.5%)	○사업계획회의 참석자 식사제공 5,000원×60명=300,000원	카드사용
		간담회비(다과비)			
		물품구입비	25천원(1.5%)	○사무용품 구입 25,000원 × 1식 = 25,000원	카드사용
		기타			
	활동비	특근매식비			
		사무용품비			
재료비					

※ 예산항목(보조비목)과 세부항목(보조세목)은 사업 특성에 따라 부서에서 변경하여 사용가능

<작성요령>

- ① 예산항목 : TV홍쇼핑 입점비, 홍쇼핑 택배비, 영상제작비, 수수료 등으로 구분하고 그 안에서 다시 세부항목으로 구분
- ② 산출기초 :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(예시) 단가(원)×수량(명, 부, 회 등)=○○○천원
- ③ 경비사용방법 :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사용, 계좌이체 등
- ④ 유의사항
 - 직원의 급여, 사무실 임차료, 공과금, 사무관리비 등 단체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
 - 예비비, 잡비 등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예산편성 불가(지출항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)
 - 자부담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(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)

신청단체 자산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총 자 산	총 부 채	비 고

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

(단위 : 천원)

수 입 내 용	수 입 금	비 고

사용계획

- 보조사업 수행목적에 맞도록 사용/기타 이자수입과 함께 자치단체로 반납

기대효과

정량적(구체적) 기대효과

- 사업목표 및 사업성과 간 연계를 통해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

정성적(추상적) 기대효과

- 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 등 공익적 기여도, 파급효과, 사회,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

당해 연도 신청(예정) 보조사업 목록

- \$\$\$\$\$\$지원사업 : 보조사업자 선정(담당부서명, 보조사업예산 10,000천원)
- *****지원사업 : 지원신청 예정

과거 보조사업 수행 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내역

- 수입금 집행내역 정산 → 정산 완료

【별표 1】

사업대상자 선정 평가기준표

업 체 명 :

평가항목		배점	평점	비고
조직의	* 연매출액 30억원 이상	10		재무재표 또는 거래내역서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객관적 자료 (21년 또는 22년)
	* 연매출액 20억원 이상 ~ 30억원 미만	9		
	* 연매출액 10억원 이상 ~ 20억원 미만	8		
	* 연매출액 5억원 이상 ~ 10억원 미만	7		
	* 연매출액 1억원 이상 ~ 5억원 미만	6		
	* 연매출액 1억원 미만	5		
건전성 (40)	* 최근 3년간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 없음	20		해당 보조사업에 한함 (20~22년)
	* 최근 3년간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 있음	5		
	* 경북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, 영주시 공동(통합)브랜드, 영주시 우수 농특산물 상표사용자로 지정되어 있거나 영주시 홍삼가공품 품질 인증을 받은 업체	10		담당자 확인 (홍삼가공품 품질 인증의 경우 인증서 사본 제출)
*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	5			
상품의	* 연3회 이상 공인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, 식품 성분검사 등을 실시	10		농약잔류검사서 또는 안전성 검사 성적서 (22년) * 단체의 경우 소속원의 검사서 제출 가능(단, 소속원이 생산한 원재료 또는 가공품을 판매해야함)
	* 연1회 이상 공인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, 식품 성분검사 등을 실시	7		
	* 공인기관을 통한 검사는 없으나 리콜제 등 자체적 품질관리	4		
품위 (20)	친환경농산물인증서, GAP인증서 전통식품 품질인증서, 유기가공 식품인증서 HACCP, FDA, GMP, ISO(식품관련) 가공식품 산업표준 KS인증서			인증서 사본 등
	* 인증서 2개 이상 첨부	10		
	* 인증서 1개 첨부	5		
	* 인증 실적 없음	2		

평 가 항 목		배점	평점	비 고
유통 차 별 화 (20)	* 생산 및 제조, 저장 관련 기술특허 2건 이상 * 생산 및 제조, 저장 관련 기술특허 1건 이상 * 생산 및 제조, 저장 관련 기술특허 없음	10 5 2		특허증 사본
	* 대형마트 납품(이마트, 롯데마트, 홈플러스 등) * 중소형마트 납품(농협하나로마트, 대백마트 등) * 자체 영업점 판매	10 8 3		계약서 등 관련서류 증빙
소 비 자 집 근 성 (15)	* 상품 홍보 실적 5회 이상 * 상품 홍보 실적 3회 이상 * 상품 홍보 실적 1회 이상 * 상품 홍보 실적 없음	5 4 3 2		홍보 사진 등 (20~22년) * 기사, 유튜브, 방송, 박람회 참여, sns-홍보 바이럴마케팅 등
	* 경북고향장터 사이소 또는 영주장날 쇼핑몰 입점 업체 *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	10 2		홈페이지 확인 (판매중이어야 함)
성 장 잠 재 력 (5)	* 최근 3년간 행정·지도·단체가 주관하는 교육훈련에 참여한 실적 3회 이상	5		교육 이수확인서 등 (20~22년)
	* 최근 3년간 행정·지도·단체가 주관하는 교육훈련에 참여한 실적 2회 이상	4		
	* 최근 3년간 행정·지도·단체가 주관하는 교육훈련에 참여한 실적 1회 이상	3		
	* 최근 3년간 행정·지도·단체가 주관하는 교육훈련에 참여한 실적이 없는 경우	2		
가 감	* 특허청 상표 또는 디자인 등록 포장재 지정업체(+5) * 지난 3년간(20~22년) 수상실적(+5) * 지난 3년간 해당사업 포기한 업체(-20)			상표등록증 및 표창장 사본 등, 담당자 확인
합 계				

※ 총 합계가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(가점으로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, 100점으로 인정함)